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3752 |
|------------|------|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 의 자 : 정양석 · 황영철 · 장석춘

김재경 · 김현아 · 윤영석

오신환 · 박용진 · 김용태

김순례 · 지상욱 · 염동열

박성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재방문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시행령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직접 전달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과 비교할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

요한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의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전달”을 “전달·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전달”을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 시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④ 그 밖에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과 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제24조 제2항”을 “제24조 제2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u>전달</u>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u>전달</u>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 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 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 <p>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u>전달</u>·<u>송달</u> 등) ① ----- ----- ----- ----- <u>직접 교부</u>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 <단서 삭제></p> <p>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 시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대통령령으로</p> |

| | |
|--|---|
| | <p><u>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u></p> |
| <u><신 설></u> | <p><u>④ 그 밖에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과 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제38조(별 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u>제24조제2항</u> 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제38조(별 칙) ----- ----- ----- ----- -- <u>제24조제2항 후단</u> -- ----- -----. |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u>제24조제2항</u> 을 위반한 자 | 제39조(과태료) ①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제24조제2항 후단</u> --- |

4. (생략)

②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